

가스보일러 시공시 하자담보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조항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

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가스보일러 하자담보기간:1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도시가스공급규정 관련조항

● 서울시 공급규정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당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기를 설치(교체를 포함) 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상태가 제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요청일로부터 1일이내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 경기도 공급규정

제15조(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시설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제20조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를 교체한 종전의 수요자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가스보일러 등(온수기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한 자가 관밀연결공사를 시행코자할 경우 제1항의 시공기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전안전점검시 시공자가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수요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스보일러시공자 보험가입의무화 제도시행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2003. 5. 27 법률 제6886호)으로 가스보일러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이의무화됨.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가입) 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 생략
2. - 생략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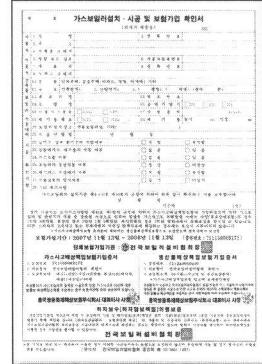
※ 보험가입 위반자 과태료 500만원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②법 제43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공자는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자가 온수보일러 및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함.(별표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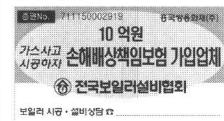
※ 시행규칙 제6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3억원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별표 17의2)



**도시가스 업무협약에 따른
보험가입 확인 필증(스티커)
제작 배포**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의 법률상 의무를 다양화 위하여 우리협회 회원이 설치 시공한 보일러에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지역에 배포하였다.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 인증 스티커 크기변경 알림

지난 9.19(금) 개최한 2008년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가스보일러시설 안전점검 및 동 사고예방대책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원사 및 시공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배기통 실치시 동 스티커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 스티커크기(15mm X 15mm)가 작아 식별이 곤란하여 크기 확대 또는 여러 장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요망	15mm X 15mm	30mm X 30mm	공사 성능인증업무지침 개정 (개정일: 2008. 11. 03)

가스보일러 오인연결 방지 개선방안

가스보일러 오인 연결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가스보일러 설치 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2. 현실태 및 문제점

- 가스관과 급수관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스티커 또는 Tag를 부착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나 쉽게 떨어지거나 제거됨.
- 협소한 장소에 가스보일러 설치 시 표시사항이 훼손되었을 경우 가스관과 급수관의 오인 연결 가능성 이 상존함.

3. 개선방안

■ 가스안전공사 추진사항

○ KGS Code 개정 추진

가스보일러 바닥면 배관연결부 주위에 “가스”, “급수” 등을 양각 또는 음각 글자로 표시하고 가스 관 전용마개를 황색을 설치토록 표시방법. *관련 Code: KGS AB131(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 및 KGS AB133(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기준)

○ 가스보일러 제조사 간담회 개최

표시방법 보완에 대하여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확정.

■ 도시가스 추진사항

○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개정

가스관 및 급수관의 연결 상태를 철저히 확인토록 공급전 안전점검 세부 기준 마련(도시가스사 내규 개정)

○ 공급전 안전점검 철저 및 시공자 감독 강화

가스관과 급수관을 잘못 연결한 상태에서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급전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 시공 관련 협회 추진사항

○ 법정교육 철저 및 회원사 홍보 실시

에너지이용협리화법 제65조에 따른 난방시공업 법정교육(주기 3년)시 가스관과 급수관을 오인 연결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

회원사 정기 Workshop 및 원간지에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 연소기 전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사용 의무화 안내

2011년 4월부터 연소기용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구분 제조토록 의무화 되므로 가스보일러 시공 시 내열성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토록 회원사에 안내.